



싱가폴 해사 중재 규칙 (제 2차 개정 (2009))

- 2013년 1월 개정 내용

이 버전은 2013년 1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판: 2004

2차 개정판: 2009년 5월

2차 개정판: 2013년 1월 개정 내용

싱가폴 해상 중재 규칙 2차 개정 (2009)

규칙 1	정의	2
규칙 2	적용범위	2
규칙 3	통지 및 기간의 산정	2
규칙 4	중재 개시	3
규칙 5	피신청인의 답변	3
규칙 6	중재 판정부의 선정	3
규칙 7	다수 당사자에 의한 중재 판정부 선정	4
규칙 8	청구 이유서의 송달	4
규칙 9	청구 이유서의 내용	5
규칙 10	청구 이유서의 송달	5
규칙 11	추가 서면	5
규칙 12	중재 판정부의 수당	5
규칙 13	중재 판정부의 비용 담보	6
규칙 14	보궐 중재인의 선정	7
규칙 15	중재 판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7
규칙 16	중재인에 대한 기피	7
규칙 17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8
규칙 18	중재 판정부의 해임	8
규칙 19	중재인(들)을 대체할 경우 중재 절차의 운영	8
규칙 20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	8
규칙 21	준거법	9
규칙 22	관할 중재지	9
규칙 23	중재 언어	9
규칙 24	통역사	9
규칙 25	중재절차	9
규칙 26	당사자들과 중재 판정부 간의 의사소통	10
규칙 27	당사자 대리인	10
규칙 28	심리기일	10
규칙 29	증인들	11
규칙 30	중재 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	11
규칙 31	절차의 종료	12
규칙 32	중재 판정부의 기타 권한	12
규칙 33	중재 판정부의 결정 방법	13
규칙 34	예비적 회의	13
규칙 35	중재 판정	13
규칙 36	통화 및 이자	14
규칙 37	추가 판정	14
규칙 38	판정 또는 추가 판정의 정정	14
규칙 39	합의	15
규칙 40	비용	15
규칙 41	이의권의 포기	16
규칙 42	비밀 유지	16
규칙 43	책임 배제	16
규칙 44	소액 청구 절차	16
규칙 45	휴회	18
규칙 46	문서의 송달	18
규칙 47	일반 조항	18
규칙 48	규칙의 개정	19
별지	질문지 (규칙 2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보 제공이 필요함)	19

규칙 1

1. 정의

1.1. 이 규칙은 “SCMA 규칙”을 말한다.

1.2.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제 중재법 (Act)” 이란 국제 중재법 (Cap 143A) 및 이를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모든 법률을 말한다.

“중재원장 (Chairman)” 이란 싱가포르 해상 중재원의 장을 말한다.

“중재원 (Chamber)” 이란 싱가포르 해상 중재원을 말한다.

“SCMA 소액 청구 절차 (SCMA Small Claims Procedure)” 란 이 규칙 제44조 에서 정한 것처럼 소가의 총액이 미화 75,000 달러 미만인 사건에 대한 절차를 말한다.

“사무국 (Secretariat)” 이란 싱가포르 해상 중재원의 사무국을 말한다.

“중재지 (Seat)” 란 중재의 법정지를 말한다.

“중재판정부 (Tribunal)” 는 중재인이 1인인 경우 당해 중재인 또는 중재인이 2인 이상 선정된 경우 당해 중재 판정부의 모든 중재인들을 말한다.

규칙 2

2. 적용 범위

SCMA 규칙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언제든지 중재합의에 적용되고, 중재를 규율하게 된다. 단, SCMA 규칙이 당사자들이 달리 정할 수 없는 국제중재법의 강행 법규 규정 (중재지가 싱가포르 내 일 경우) 혹은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지가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국가일 경우) 에는, 강행 규정 혹은 당해 중재 준거법이 SCMA 규칙에 우선한다.

규칙 3

3. 통지 및 기간의 산정

3.1. 서면 형식의 통신 수단으로는 팩스, 이메일 혹은 당사자의 전화번호, 주소, 사이트에 접속되는 전자 교신의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되, 이는 기타 다른 형태의 서면으로 된 통신수단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3.2. SCMA 규칙의 목적상 통지서, 통신 혹은 제안을 포함한 모든 통지는 받는 이에게 직접 배달된 경우, 수신인의 거주지, 영업소 혹은 우편 주소로 배달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조회 이후에도 위에 열거된 수령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신인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거주지 또는 영업소로 송달된 경우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통지는 송달된 날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 3.3. SCMA 규칙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은 통지, 통지서, 통신 및 제안을 수령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신인의 거주지 혹은 영업지에서 공휴일 혹은 비영업일인 경우에,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 도중에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킨다.
- 3.4. 전송(transmission)은 전송한 날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규칙 4

4. 중재 개시

- 4.1. 분쟁을 SCMA 규칙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된 중재신청서 (Notice of Arbitration)를 송달해야 하며, 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신청;
 - b. 분쟁 당사자들에게 관한 사항;
 - c. 원용된 중재 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
 - d. 분쟁과 관련된 혹은 분쟁이 발생한 원인이 되는 계약서;
 - e. 당사자가 이전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의 수 (예: 한명 혹은 세명); 그리고
 - f. 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들)의 이름(들).
- 4.2. 중재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분쟁의 성격과 상황의 개요; 그리고
 - b. 청구취지

규칙 5

5. 피신청인의 답변

- 5.1.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답변서 (“Response”)를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a. 중재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제안 사항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 b. 피신청인이 제안하는 중재인(들)의 이름(들)
- 5.2. 답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a. 청구의 전체 혹은 부분을 인정 혹은 부정; 그리고
 - b. 예상되는 반대 청구의 개요

규칙 6

6. 중재 판정부의 선정

- 6.1. 이 규칙 제6조에 기술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 선정 절차를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는 이 규칙 제6조에 우선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세 명의 중재인이

선정된다.

- 6.2.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그리고 중재 신청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중재원장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원장이 선정하는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지명한 후보들 중에 한 명이 될 필요는 없다.
- 6.3. 3 인의 중재인이 선정될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해야하고 그에 따라 선정된 두명의 중재인이 제 3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6.4.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 선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지명을 하지 못한 경우, 혹은 두 명의 중재인이 그들이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 3의 중재인을 선정하는데 합의를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중재원장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6.5. 중재 판정부는 중재인 선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국 (Secretariat)에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재인 선정과 분쟁의 간략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6.6. 중재 판정부 구성은 (a)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될 중재 신청서 혹은 답변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쟁; 혹은 (b)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서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경우이든, 중재 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규칙 7

7.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중재 판정부 선정

- 7.1. 중재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내에 중재 판정부를 선정하는 절차에 합의해야한다.
- 7.2. 당사자들이 절차에 합의를 못한 경우, 위의 조항에 언급된 21일 기간이 지났을 때, 중재 판정부는 중재원장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선정되어야 한다.

규칙 8

8. 청구 이유서의 송달

- 8.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를 선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 이유서 (Statement of Claimant's Case)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8.2. 신청인의 청구 이유서를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답변 이유서 (Statement of Respondent's Defense)와 반대 청구 (Counterclaim) (만약, 있다면)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8.3. 피신청인의 답변 이유서를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만약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 이유서의 내용/ 혹은 반대 청구에 반박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답변서 (Statement of Claimant's Reply) 와

필요하다면 반대 청구에 대한 답변 (Defence to Counterclaim) 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8.4. 중재 판정부의 허가 없이는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다.

규칙 9

9. 청구 이유서의 내용

- 9.1. 청구 이유서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당사자의 주장, 답변, 반대 청구를 기술해야 하며, 따라서 포괄적인 사실 관계 내용과 당사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
- 9.2. 그러므로 청구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모든 청구 취지와 모든 수량화 할 수 있는 청구의 청구액과 그에 대한 자세한 계산식을 포함할 것;
 - b. 상대방의 주장이나 진술을 부인하는 이유를 자세히 진술할 것; 그리고
 - c. 만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라면 당사자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진술할 것
- 9.3. 청구 이유서는 작성자 혹은 작성자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 9.4. 이 규칙 제8조 에서 규정한 모든 서면들은 반드시 당사자들간의 쟁점과 연관된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규칙 10

10. 청구 이유서 송달 불이행

- 10.1. 만약 신청인이 이 SCMA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혹은 중재 판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청구이유서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절차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10.2. 만약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중재 판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중재 판정 (Award) 을 내릴 수 있다.

규칙 11

11. 추가 서면

- 11.1.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이미 제출한 청구 이유서 외에 어떠한 추가 서면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며, 그러한 서면을 제출하며 송부할 기한을 정한다.
- 11.2. 그러한 추가적인 서면은 중재 판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규칙 12

12. 중재 판정부의 수당

- 12.1. 중재인은 그의 재량하에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최소 3개월) 그 때까지의 그의 수당 (모든 비용을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 청구는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때 중재판정부의 다른 중재인들과 상대방도 참조에 넣어야 한다. 그러한 지급 청구는 (a) 해당 수당에 대한 최후의 책임부담 부분과 (b)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연대 책임 및 개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2. 만약 위의 12.1. 항의 수당이 지급 청구일로부터 28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중재인은 단독 재량으로 자신을 선정된 당사자 및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통지를 하면서 통지일로부터 14일 내에 수당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사퇴를 하겠다는 사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른 당사자들은 상기 14일 이내에 청구된 금액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사퇴를 막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수당에 대한 최후 책임부담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 하에서 사퇴할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 날까지 발생한 그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중재인은 그의 사퇴에 따른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칙 13

13. 중재 판정부의 비용 담보

- 13.1. SCMA 규칙하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문이 작성될 때까지 예상되는 비용 (수당 및 비용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이 규칙상의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한 담보의 형태는 중재 판정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는 중재 판정문을 예정한 구두심리기일이 시작되기 21일 전에, 혹은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판정부가 사건을 검토하고 중재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결문을 작성하기 바로 전에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 13.2. 중재 판정부가 담보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예상되는 총 비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는 (a) 구두 심리기일이 있는 중재의 경우, 통상 그러한 구두 심리 기일이 확정된 때에 알려주며, 이는 늦어도 담보가 준비되어야 할 기한으로부터 28일 전에 알려주며; (b)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토하고 중재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결문을 작성하기 28일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예상되는 총 비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13.3. 담보 요구는 구두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하며,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상기 당사자가 기한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7일내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하고, 만약 그럼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중재 판정부는 심리일을 취소하거나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 사건 검토나 중재 판결문을 쓰지 않을 수 있다.
- 13.4. 이 규칙 제13조에서 정해진 기한에 관해, 중재 판정부는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할 경우 더 짧은 기한을 정할 권한이 있다.

- 13.5. 이 조항들에 따라 제공된 담보나 지급된 금원은, 중재인 수당 및 비용에 대한 당사자들간에 최종 책임부담 부분이나, 미지급금이 모두 지불될 때까지 중재 판정부에 대하여 당사자들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규칙 14

14. 보궐 중재인의 선정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 혹은 해임될 경우, 교체되는 중재인 대신하여 새로이 중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상 중재인 지명 및 선임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보궐 중재인이 선임된다.

규칙 15

15. 중재 판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 15.1. SCMA 규칙 하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중재 판 정부는 중재 절차 내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어떠한 당사자를 변호해서도 안된다.
- 15.2. 잠재적 중재인은 그의 중재인 선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접촉해 오는 자들에게, 그의 공정성 혹은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 15.3. 중재인이 지정되거나 선정이 되면 제15.2. 항에 서술된 모든 상황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규칙 16

16. 중재인에 대한 기피

- 16.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16.2.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한 필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16.3. 당사자는 지명된 중재인이건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이건, 선임이 끝난 후에 알게된 이유에 의해서만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16.4.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 (중재 판정부가 한 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중재인에게) 와 상대방(들)에게 기피신청서 (Notice of Challenge) 를 송달해야 한다.
- 16.5. 기피신청서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혹은 제16.1. 혹은 제16.2. 에 진술된 사정을 당사자가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에 송달 및 전달되어야 한다.
- 16.6. 기피신청서는 기피의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 16.7. 기피 신청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중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16.8.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그 기피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피신청 이후에 중재인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중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의 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경우에, 규칙 제6조와 규칙 제14조에 나와있는 절차를 통해 보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규칙 17

17.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17.1. 상대방이 규칙 제16조 상의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당한 중재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문제를 중재원장에게 요청하여 중재원장이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 17.2. 만약 중재원장이 이러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면 규칙 제6조와 규칙 제14조에 마련되어 있는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절차에 따라 보궐 중재인이 선정되거나 선택되어야 한다.
- 17.3. 규칙 제17.1. 상의 중재원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규칙 18

18. 중재 판정부의 해임

- 18.1.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당해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a. 중재인이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중재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능력에 정당한 의심이 있을 때; 혹은
 - b. 중재를 수행할 때 혹은 중재 판결을 내릴 때 모든 합리적인 대응조치를 거부하거나 이에 실패한 경우
- 18.2. 관련된 중재인(들)은 중재인 해임 신청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
- 18.3. 중재인 해임 시, 보궐 중재인이 규칙 제6조와 규칙 제14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규칙 19

19. 중재인(들)을 대체할 경우 중재 절차의 운영

보궐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 재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재량하에서, 그가 재구성되기 전에 진행되어 온 중재 절차를 다시 반복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절차를 다시 반복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규칙 20

20. 중재 관정부의 관할권

SCMA 규칙 다른 조항들이나 현재 발효된 관련 법규에서 정의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외에도, 중재 관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가진다.

- a. 중재관정부 자체의 관할권을 결정하고;
- b. 중재 합의서의 범위와 중재 시 야기되는 법률 문제를 고려하여, 거래로부터 야기된 혹은 관련된 모든 분쟁들을 정하고;
- c.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시, 서면 혹은 구두 증거를 받아서 고려할 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 d. 어느 당사자가 SCMA 규칙이나 중재 관정부의 서면 지시와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주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중재 판결을 내릴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중재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 알려야 한다.

규칙 21

21. 준거법

중재 관 정부는 당사자가 정한 법률을 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법으로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 관 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제사법의 규칙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규칙 22

22. 관할 중재지

- 22.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할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한다. 중재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CMA 규칙 하에서 중재법은 국제중재법으로 한다.
- 22.2. SCMA 규칙 하에서의 중재 판결은 관할 중재지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22.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중재의 실질적 심리나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23

23. 중재 언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규칙 24

24. 통역사

- 24.1. 만약 필요하다면, 한 당사자 혹은 모든 당사자가 중재 관정부의 허가를 받고 통역사를 선정할 수 있다.

- 24.2. 통역사는 두 당사자들의 이익과는 별개로 독립성을 가져야하며 통역사를 선정하는 당사자는 통역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24.3. 만약 통역사가 두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경우, 비용은 두 당사자가 나누어 지불해야 하되, 당사자가 지불할 비용의 비율은 중재 판정부가 결정한다.

규칙 25

25. 중재 절차

- 25.1. 중재 판정부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고, 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중재법 (만약 중재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혹은 관련법 (만약 중재지가 싱가포르 외의 국가인 경우) 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장 큰 재량 권한을 갖는다.
- 25.2. SCMA 규칙이 정한 내에서, 중재 판정부는 모든 절차 관련 문제 및 증거 관련 문제들을 포함한 중재절차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25.3. 중재 판정부가 이미 송달된 서면 제출에 기반하여 중재 판결을 내려도 좋다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두 당사자들은 반드시 별지 질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질문표는 맨 아래에 선서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선서는 송달받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당사자가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한 임원이 서명해야 한다. 질문표를 작성하여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와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답변서 (Statement of the Claimant's Reply) 가 송달되어야 하는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규칙 26

26. 당사자들과 중재 판정부 간의 의사소통

- 26.1. 중재 판정부가 서면으로 된 의사소통을 한 당사자에게 보낼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 혹은 상대방들에게도 사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 26.2. 당사자가 서면으로 된 의사소통 (서면, 전문가 보고서 혹은 증거 문서들을 포함)을 중재 판정부에 보내야 할 경우, 상대방(들)을 참조에 넣어야 하며, 중재 판정부에 그들이 참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6.3. 만약 중재 판정부가 한 명 이상의 중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재 판정부에게 하는 모든 의사소통은 각각의 중재인들에게 각각 보내져야 한다.

규칙 27

27. 당사자 대리인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단,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대리인들의 이름들과 주소들이 상대방(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규칙 28

28. 심리 기일

- 28.1. 당사자들이 서면으로만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거나 심리기일을 갖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부는 전문가 증인을 포함한 증인에 의한 증거 제출 혹은 구두 변론을 위해 심리기일을 열어야 한다.
- 28.2. 중재 판정부는 회의나 심리기일의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해야 한다.
- 28.3. 심리기일 전에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특별히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안 또는 쟁점 리스트를 보낼 수 있다.
- 28.4. 당사자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충분한 이유없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28.5.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모든 회의와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규칙 29

29. 증인들

- 29.1. 중재 판정부는 각 당사자들이 소환하고자 하는 증인들의 이름과 직함에 관해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9.2. 어떠한 당사자도 중재 판정부의 허가 없이 전문가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 29.3. 증거를 제출하는 모든 증인은 중재인이 정한 규칙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대리인에게으로부터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 29.4. 중재 판정부는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증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9.5. 중재 판정부의 명령 혹은 지시 하에서, 증인들의 증언은 서면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는데, 증인이 서명을 하거나 혹은 적절한 절차로 선서를 하고 한 진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증인이 구두 증거 제출을 위해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중재 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그의 서면 증언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 29.6. 중재 판정부는 여하한 증인들이 제출하는 증거 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증명력을 결정하게 된다.

규칙 30

30. 중재 판정부가 선임한 전문가

- 30.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중재 판정부는:
 - a.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특정 쟁점에 대해 중재 판정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 b.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물건 또는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 30.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만약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중재 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는 서면 혹은 구두 보고서를 송달 한 후에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구술 증언을 하기 위하여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들은 전문가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 30.3. 30.2 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선임한 보좌인 (assessor) 혹은 중재 판정부가 오로지 절차적 문제에 관련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선임한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31

31. 절차의 종료

- 31.1.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심문이 필요한 증인, 제출할 문서가 있는 지를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절차를 종료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 31.2. 예외적으로,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심리기일을 다시 열수 있다.

규칙 32

32. 중재 판정부의 기타 권한

- 32.1. 국제 중재법에 명시된 권한 혹은 관할 중재지 준거법에서 정한 권한 외에 중재 판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특정 조건 하에서 (비용 등), 당사자들이 신청 혹은 반소 신청 수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 b. SCMA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 c. 중재 판정부가 필요하거나 신속함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것;
 - d.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위해 소유물을 개방하도록 명령하는 것;
 - e. 중재 판정부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문서들 중 당사자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들의 보호하에 혹은 권한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것;
 - f. 소유물이 분쟁의 실체적 쟁점이거나 그 일부분인 경우에, 그것의 샘플 채취하거나, 소유물에 대한 관찰 혹은 실험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
 - g. 직권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명령하거나 방식을 제시 하는 것; 그리고
 - h. 국제 중재법 혹은 이를 대체하는 여하한 새로운 입법형태의 법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혹은 SCMA 규칙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

- 32.2.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절차에 다른 관련 당사자들을 (그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모든 분쟁에 대한 하나의 최종 판결 (Final Award) 를 내릴 수 있다.
- 32.3. 두 개 이상의 중재사건들이 공통된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중재 판정부는 그 두 개 이상의 중재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만약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중재 판정부는 공평성, 경제성, 신속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a. 중재 판정부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한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이 공개한 문서가 다른 중재절차에서도 당사자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 b. 한 중재 절차에서 제출된 증거가 다른 중재 절차에서도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상기 증거에 대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보장되었어야 하며, 중재인들이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을 부가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규칙 33

33. 중재 판정부의 결정 방법

중재 판정부가 선정되면, 중재판정부의 모든 지시, 명령, 결정, 판정이 중재 판정부 전원 일치로 이루어지거나 중재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 중재인이 판결문에 서명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들 과반수의 서명으로도 충분하지만, 대신 그 중재인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규칙 34

34. 예비적 회의

중재 판정부는 중재 진행 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예비 회의가 필요할 때 예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예비 회의(들)의 목적은 당사자들과 중재 판정부가 중재 절차를 정리하고 중재 과정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이 심리기일의 준비과정과 수행에 대해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선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함이다.

규칙 35

35. 중재 판정

- 35.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절차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서면으로 된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하며 그 판정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판정문은 판정 날짜와 중재 판정부 전원 혹은 중재판정부 과반수 이상의 중재인들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 35.2. 중재 판정부는 다른 쟁점에 대해 중간 판결 혹은 개별 판결을 각기

다른시기에 내릴 수 있다.

- 35.3. 모든 판정은 중재 판정부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 35.4. SCMA 규칙하에서 중재를 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없이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35.5. 중재 판정부의 중재인들은 판정문에 서명을 하거나 판정문을 수정하기 위해 모일 필요가 없다.
- 35.6. 판정문이 작성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판정부의 수당과 비용에 대한 내용과 그러한 비용이 모두 지급되어야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보내진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된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하는 단계에서는 판정문이나 판정문의 사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필요가 없고 모든 수당과 비용이 지불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송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35.7. 중재 판정문이 내려진 날로부터 한 달이내에 상기 수당 및 비용등이 지급되지 않고 당사자들도 중재판정문을 수령해가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게든 서면 통지를 보내서 중재 판정문과 관련된 수당과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판정문과 관련된 수당 및 비용을 지급하고 중재판정문을 수령할 의무를 진다.
- 35.8.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 중 한 당사자가 판정문을 수령해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판결문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 35.9. 만약 중재원에서 판정문이 출간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들에게 판정문 출간에 대한 의사를 묻는 통지를 보내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중재원에 보내지 않는 한, 판정문은 중재원에 의해 학술적, 전문적 목적으로 출간될 수 있다. 출간물은 당사자들, 그들의 법적 혹은 기타 대리인, 중재 판정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익명으로 편집되어 출판될 것이다.

규칙 36

36. 통화 및 이자

- 36.1. 중재 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통화로도 판정문을 내릴 수 있다.
- 36.2. 중재 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결정된 여하한 금전지급명령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단리 혹은 복리로, 판정일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이자를 책정할 수 있다.

규칙 37

37. 추가 판정

- 37.1.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중재

판정부에게 판정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중재 절차에서 주장된 청구에 대해 추가적인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같이 통지해야 한다.

- 37.2. 만약 중재 판정부가 추가적 판정에 대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심리나 증거 없이도 그러한 생략을 보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적인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그러한 추가적 판정은 요청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규칙 38

38. 판정 및 추가판정의 정정

- 38.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 판정부에 통지를 하여 판결, 계산상의 실수, 서기의 실수 혹은 오타나 유사한 종류의 실수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8.2. 만약 중재 판정부가 볼 때 그러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여길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한 실수를 정정해야 한다. 정정된 부분은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하고 판결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 38.3. 중재 판정부는 직권으로 제38.1. 항에 열거된 종류의 실수를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규칙 39

39. 합의

- 39.1. 중간 판결이 아닌, 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면 중재 판정부는 중재 절차 종료에 대한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당사자들이 요청하고 중재 판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합의된 조건으로 그와 같은 합의를 중재 판정의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는 그러한 판정에 대한 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
- 39.2.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a. 당사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재가 종료되는 경우 이를 중재 판정부에 즉시 알려야 하고;
 - b. 여하한 합의의 경우에, 중재 비용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 39.3. 만약 중재 판정이 나오기 전에, 중재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제39.1. 항에 나와있는 이유를 제외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중재 판정부는 절차 종료 명령을 내릴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 39.4. 중재 절차의 종료 명령 혹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른 중재 판정문의 사본은 중재 판정부가 서명을 한 후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규칙 40

40. 비용

- 40.1. 중재 판정부는 최종 중재판정문에서 중재 비용을 명시하고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비용 부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40.2. “중재 비용” 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중재 판정부의 수당과 비용; 그리고
 - b. 전문가 조언 또는또는 기타 지원에 대한 비용
- 40.3.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에 한 당사자의 또는법적 비용 또는또는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이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 판정문은 그러한 비용을 정하거나 또는 비용이 중재 판정부에 의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41

41. 이의권의 포기

SCMA 규칙 위반을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42

42. 비밀 유지

당사자들과 중재 판정부는 중재 (중재가 이루어지는 사실 포함) 와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중재 판정에 대하여 항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a.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할 목적인 경우;
- b. 어떠한 국가의 법원이든 중재 판정의 집행을 위한 신청을 할 목적이 있거나 위 신청과 관련된 경우;
- c.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
- d. 공개를 하는 당사자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 e. 감독 기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 또는 요구가 구속력이 없더라도 공개를 하는 당사자가 관행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위 요청이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규칙 43

43. 책임 배제

- 43.1. 중재 판정부, 중재원장, 중재원 그리고 그 임직원들 또는 대리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SCMA 규칙 하에서 이행되는 중재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3.2. 판정이 내려지고 판정의 수정 또는 추가 판정의 가능성도 없게 된 후,

중재 판정부 또는 중재원장은 중재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발언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중재에서 발생된 어떠한 소송절차에도 중재인, 중재원장, 또는 중재원의 임직원들 또는 대리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규칙 44

44. 소액 청구 절차

신청

- 44.1. 만약 분쟁의 청구금액과/또는 반대 청구금액의 총 합계가 미화 75,000 달러 미만인 경우 (이자와 비용 제외) 또는 미화 75,000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자와 비용 제외), 규칙 제44조 (본 규칙) 에 나와있는 신속절차가 적용된다.
- 44.2. 만약 당사자들이 청구가 본 규칙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청구금액이 미화 75,000 달러 (이자와 비용 제외) 가 넘더라도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 44.3. 만약 당사자들이 본 규칙이 중재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본 규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간 단축

- 44.4. 규칙 제8조 에 나와있는 청구 이유서 송달 목적에서, 각각의 서면에 대한 기한은 14일로 단축된다.

약식 판정

- 44.5. 중재 판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간략하게 쟁점에 대한 판정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한다.
- 44.6. 중재 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한, 구두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만약 중재 판정부가 구두 심리를 요구한 경우 구두 심리는 단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기 위한 것이며 중재 판정부는 심리 시간을 할당하고 결정할 수 있다.
- 44.7. 중재 판정부가 쟁점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증거개시 추가 명세서, 질문서에 대한 명령을 중재 판정부에 요청할 수 없다.
- 44.8. 중재 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기는 범위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된 문서들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다.

판정 기한

- 44.9. 중재 판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청구 이유서를 접수한 날 또는 구두 심리가 열린 경우 구두 심리가 끝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44.10. 이 절차하에서는 판정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중재인(들)의 선정

44.1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44.12. 중재인(들)의 수당은 중재원에서 정한 상한액 이하로 한다.

비용

44.13. 중재 판정부는 한 당사자의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법적 또는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으로부터 지불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액수는 중재원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칙의 적용

44.14. 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 SCMA 규칙상의 모든 다른 조항들은 본 규칙에 나와있는 절차 하의 중재에 준용된다.

규칙 45

45. 휴회

만약 사건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분적으로만 심리되고 휴회되었을 때, 중재 판정부는 중재 관련 장소의 예약에 관한 수수료까지 적절히 고려한, 이미 발생한 수당과 비용에 대해 중간 정산을 할 권리가 있고 중간 정산금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균등히 분할하여 지불되거나 또는 중재 판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지불되어야 한다.

규칙 46

46. 문서의 송달

중재 절차에서 변호사 또는 다른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중재 절차의 목적 상 교부 또는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서 또는 문서들 및 중재 판정부가 내린 모든 결정, 명령, 판정 등은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규칙 47

47. 일반 조항

47.1. 최종 판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중재 판정부는 모든 문서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달리 요청하지 않으면 중재 판정부는 문서를 파기하고 사건을 종료할 것이다.

47.2.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재 판정부는 SCMA 규칙의 취지에 따라 행한다.

규칙 48

48. 규칙의 개정

SCMA 규칙은 중재원에 의해 때때로 개정될 수 있다.

별지

질문표

(규칙 25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가능한 한, 당사자들은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합의가 가능하였던 경우 질문표의 답변에서 이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의 본질에 대한 간략한 요약
2. 청구 또는 반대 청구의 대략적 청구금액
3. 청구와 반대 청구에 의하여 제기된, 결정을 요하는 주요 쟁점
4. 청구, 답변, 또는 반대 청구에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5. 쟁점들 중 선결적 쟁점으로서 쟁점들이 판결의 대상으로 적절한지의 여부
6. 혹시 어떠한 부분에서든 추가적인 공개가 필요한지의 여부
7. 중재가 서면으로만 된 중재인지 또는 구두 심리가 필요한지의 여부
8. 어떤 증거 서면을 제시하려고 하는지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면) 구두 증거가 제출될 예정인지의 여부
9. 어떠한 전문가 증거가 보고서 형태 그리고/또는 구두 진술로 제출할 예정인지 그리고 전문가 보고서가 언제까지 교환될 수 있는지 기술
10. 만약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면, 심리의 예상 시간을 기술
11. 만약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면, 어떤 사실에 대한 증인과 전문가 증인이 심리에 소환될 예정인지를 기술
12. 각 당사자들의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기술
13. 당사자가 비용에 대한 담보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

선서 (질문표를 작성하는 사람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임원으로서 아래에 서명을 해야함):

[신청인/ 피신청인] 을 대신하여, 본인은 아래에 서명된 [이름]의 [기관에서의 직책] 이고, 이러한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고,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짜